

참 착한 통장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씨티은행)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안내 드립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본 상품설명서를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안내 드립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참 착한 통장
- 상품특징 : 예금 잔액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입출금예금 상품입니다.

2 거래 조건

구분	내용
가입대상	■ 개인
상품종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및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합니다. ■ 해지 : 영업점 및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는 매월 둘째 주 마지막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다음 날 원금에 가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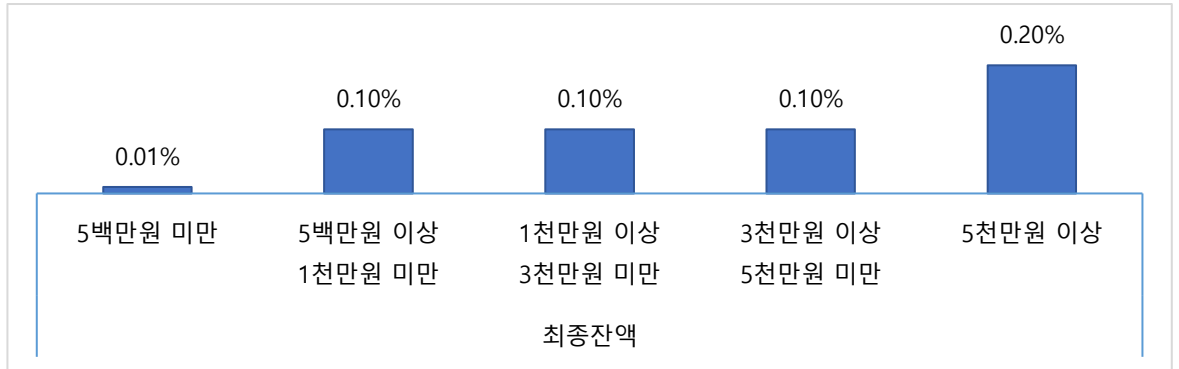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 출금, 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의 일별 최종 잔액에 따라 기본이율이 결정됩니다.

(연, 세전, 2021년 12월 21일 현재)

	일별 최종잔액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기본 이율	0.01%	0.10%	0.10%	0.10%	0.20%

기본이율



■ **과거 평균 이자율**

과거 6개월간(2021.02~2021.07) 고객에게 실제 지급된 평균 이자율은 0.27%(연, 세전)입니다.

■ **이율적용 예시**

신규일에 6천만원 입금 후 신규일 다음 날 5천6백만원을 인출하였다면, 신규일의 최종잔액 6천만원에 대해서는 0.20%(연, 세전)가, 신규일 다음날의 최종잔액 4백만원에 대해서는 0.01%(연, 세전)가 적용됩니다.

이자
산출근거

- 이자계산기간 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이율을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이자지급일에 지급합니다. 단, 이자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이자계산기간	이자결산일	이자지급일
지난 이자지급일(또는 신규일)로부터 금번 이자지급일 전일까지	매월 둘째 주 마지막 영업일	이자결산일의 다음 날

예금자보호
여부

예금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p>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p>
세제혜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합니다.(모든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양도 가능 담보제공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 가능합니다. (단,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양도가 불가능함) ■ 담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거래중지계좌 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별도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께서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은행창구를 통해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받아 금융거래 목적 및 본인 확인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금잔액이 10,000 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 원 이상 50,000 원 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 원 이상 100,000 원 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4) 예금잔액이 100,000 원 이상이며, 4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계약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예금 계약의 해지는 영업점 및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p>휴면예금 및 출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p>연계·제휴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p>기타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통장식 신규 또는 전환의 경우 이전에 발급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무통장식 계좌의 거래내역조회를 위하여 한국씨티은행의 “모바일/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유의 사항

- 상기 금리는 은행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금리가 변경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된 금리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영업점 및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이 상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은행의 사정에 의해 상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등 관련 사항을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이 상품은 한국씨티은행 수신상품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88-7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iti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해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